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18.1.15.~1.17.)

# 조례안상정

(조례 2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162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1
2018-163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8~1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 규정함(안 제3조)
- 나. 주요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0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
3. 주방, 급식실
4. 프로그램실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강당	1회/4시간	5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가산 (음향, 조명 등의 시설 이용을 포함한다)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 예산
- 관련 조문: 제3조(설치)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총 비용		1,000	2,300	3,344	175	60	6,879
세출	특교	0	0	600	0	0	600
	도비	1,000	0	0	0	0	1,000
	군비	0	2,300	2,744	175	60	5,279
	소계(a)	1,000	2,300	3,344	175	60	6,879

###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시설 건립비: 6,644백만원
- 집기 구입비: 175백만원
- 시설 운영비: 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6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거창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약초 및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17. 12월말 완료예정

## 2.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8조1항 후단)

- 삭제: 위촉 위원에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나.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다. 거창약초유통센터 규정 신설함(안 제12조~제14조)

- 설치 및 위치: 약초 및 향노화 제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설치
- 기능: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향노화 제품 개발
- 위탁: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  
마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18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6조제5호·제6호 중 “한방약초”를 “약초”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를 “향노화산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3. 향노화 제품 개발

**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0 344 778 383">&lt;신 설&gt;</p> <p data-bbox="630 703 778 741">&lt;신 설&gt;</p> <p data-bbox="181 1335 762 1417"><u>제1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data-bbox="820 344 1406 562"><u>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u> 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 data-bbox="820 568 1406 651">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p> <p data-bbox="820 703 1406 786"><u>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u>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data-bbox="820 792 1406 1010"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li> <li>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li> <li>3. 향노화 제품 개발</li> </ol> <p data-bbox="820 1061 1406 1279"><u>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u>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 data-bbox="820 1335 1406 1417"><u>제15조(시행규칙)</u> ----- -----</p>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위탁운영
- 활성화 사업 예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약초전처리, 마케팅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a - b)		180	100	100	50	50	480
세출	도비	-	-	-	-	-	-
	군비	180	100	100	50	50	480
	소계(a)	180	100	100	50	50	480

#### 3. 관련 의견

-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본 장비구입비, 위탁운영비 등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합 계	180	100	100	50	50	480
시설장비 구입비	80	0	0	0	0	80
위탁운영비	100	100	100	50	50	400

#### 2. 사업효과

- 이 시설 운영으로 초기 자립을 위한 위탁 및 장비구입비 등이 소요될 예정이나, 관내 대부분의 약초를 수집, 집하, 전처리, 유통할 계획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농한기와 특정시기 등을 이용하여, 약초 전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